

##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2인이내”를 “3인 이내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업무)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 등 쟁송사건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
2. 도가 위임하는 쟁송사건

②고문변호사는 도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대리를 할 수 없다.

제4조 본문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